

#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년월일 : 2016. 8. 7.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 변경, 관련법에 규정된 조항 삭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 변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 대상자 변경
- 낙엽 전용 봉투 제작 근거 조항 신설
- 과태료 처분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항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

## □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 및 정의 등 개정

(안 제2조제1호, 제8호)

- 나.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 변경

(안 제2조제2호)

- 다. 낙엽 전용 봉투 제작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별표2)

- 라.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대상자 변경

(안 제17조제1항제1호)

-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9조~제22조)

## □ 개정 조례안 : 불임

##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불임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제7조(급여의 종류)
- 「질서행위 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5. 19. ~ 6. 8.

##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 조례(전문)

#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자원” 을 “재활용가능자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의2 중 “시장”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안산시” 를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정책계장 정진섭
	담당자 성명·전화	김기배 (행정 2259)

별지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단위:원)

구분	2ℓ	(중간 생략)	50ℓ	100ℓ	<u>130ℓ</u> (낙엽 전용)
일반용	60	(중간 생략)	1,200	2,400	<u>3,000</u>
사업장용		(중간 생략)	2,500	5,000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중간 생략)	3,300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용어의 정의)</u></p> <p>1. “일반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 “재활용자원”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p> <p>8. “생활계폐기물” 이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p> <p>9. (생략)</p>	<p><u>제2조(용어의 정의)</u></p> <p>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p> <p>2.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p> <p>〈삭제〉</p> <p>8. (현행과 같음)</p>
<p><u>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 시장이 …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 다만, 안산시 ………………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선고일로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u>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삭제〉</p>
<p><u>제8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u></p> <p>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p>	<p>〈삭제〉</p>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수수료의 감면)</p> <p>① (생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u>(의료, 자활, 교육특례자 제외)</u>            2. (생략)</p> <p>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p>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수수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상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u>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p>																																													
<p>제21조(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lt; 삭 제 &gt;</p>																																												
<p>제2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lt; 삭 제 &gt;</p>																																												
<p>[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2ℓ</th> <th>(중간 생략)</th> <th>50ℓ</th> <th>100ℓ</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용</td> <td>60</td> <td>(중간 생략)</td> <td>1,200</td> <td>2,400</td> </tr> <tr> <td>사업장용</td> <td></td> <td>(중간 생략)</td> <td>2,500</td> <td>5,000</td> </tr> <tr> <td>공사장 생활 폐기물용</td> <td></td> <td>(중간 생략)</td> <td>3,3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ℓ	(중간 생략)	50ℓ	100ℓ	일반용	60	(중간 생략)	1,200	2,400	사업장용		(중간 생략)	2,500	5,000	공사장 생활 폐기물용		(중간 생략)	3,300		<p>[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2ℓ</th> <th>(중간 생략)</th> <th>50ℓ</th> <th>100ℓ</th> <th>130ℓ (나열 전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용</td> <td>60</td> <td>(중간 생략)</td> <td>1,200</td> <td>2,400</td> <td>3,000</td> </tr> <tr> <td>사업장용</td> <td></td> <td>(중간 생략)</td> <td>2,500</td> <td>5,000</td> <td></td> </tr> <tr> <td>공사장 생활 폐기물용</td> <td></td> <td>(중간 생략)</td> <td>3,3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ℓ	(중간 생략)	50ℓ	100ℓ	130ℓ (나열 전용)	일반용	60	(중간 생략)	1,200	2,400	3,000	사업장용		(중간 생략)	2,500	5,000		공사장 생활 폐기물용		(중간 생략)	3,300		
구분	2ℓ	(중간 생략)	50ℓ	100ℓ																																									
일반용	60	(중간 생략)	1,200	2,400																																									
사업장용		(중간 생략)	2,500	5,000																																									
공사장 생활 폐기물용		(중간 생략)	3,300																																										
구분	2ℓ	(중간 생략)	50ℓ	100ℓ	130ℓ (나열 전용)																																								
일반용	60	(중간 생략)	1,200	2,400	3,000																																								
사업장용		(중간 생략)	2,500	5,000																																									
공사장 생활 폐기물용		(중간 생략)	3,300																																										